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장애인 권리 협약

배포: 일반  
2022년 10월 6일

원본: 영어

### 장애인권리위원회

## 대한민국 제2·3차 통합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

### I. 소개

1. 위원회는 2022년 8월 24일과 25일에 개최된 제 598차 및 제599<sup>1</sup>차 대한민국의 제2차 및 3차 정기보고서를 심의 하였고<sup>2</sup>, 2022년 9월 5일에 개최된 제614차 회의에서 본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2. 위원회는 위원회의 보고 지침에 따라 그리고 보고 전 이슈 목록에 따라 작성된 대한민국의 2차 및 3차 통합 정기 보고서를 환영합니다.<sup>3</sup>
3. 위원회는 다양하고 다부문적이며 관련 정부 부처 대표를 포함하는 당사국 대표단과의 유익하고 성실한 대화에 감사를 표합니다.

### II. 긍정적인 측면

4. 위원회는 특히 다음과 같이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취해진 입법 조치를 환영합니다.
  - (a) 2021년 12월 협약 비준 시 2008년에 입력된 협약 제 25조 (e)조에 대한 유보의 철회
  - (b) 2016년 한국 수화가 당사국의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인정되는 한국 수화법의 채택;
  - (c) 2017년 점자를 한글과 함께 당사국에서 사용하는 문자의 집합으로 동일한 지위로 규정한 점자법 채택
  - (d) 2018년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에 관한 법률 채택
  - (e) 2021년 탈시설화 장애인의 독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채택.

### III. 주요 관심 영역 및 권장 사항

#### A. 일반 원칙 및 의무(조항 1-4)

5.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우려를 표합니다.

\* 제 27차 위원회에서 채택됨(2022년 8월 15일~9월 9일).

<sup>1</sup> CRPD/C/SR.598 및 CRPD/C/SR.599 를 참조하십시오.

<sup>2</sup> CRPD/C/KOR/2-3.

<sup>3</sup> CRPD/C/KOR/QPR/2-3.



(a) 장애인 복지법의 수정된 장애 정의를 포함하여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은 아직 협약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일부 장애인의 특정 요구 사항을 식별하지 못합니다., 특히 HIV/AIDS 에 걸린 청각 장애인 및 장애인;

(b) 장애의 의학적 모델은 최근 장애 등급 체계의 개정과 6 등급에서 2 등급으로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장애 분류 체계 내를 포함하여 당사국에서 여전히 널리 퍼져 있으며, 이는 포함을 막음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적절한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합니다.

(c)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의료, 보건 및 기타 전문가들 사이에서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기존의 국가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을 협약 조항과 일치시키기 위해 검토하고 모든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 및/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HIV/AIDS 에 걸린 청각 장애인 및 장애인이며 그들의 특성과 요구 사항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b) 장애에 대한 의학적 모델의 요소를 장애에 대한 인권 모델의 원칙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에 대한 법적 및 환경적 장벽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 평가 시스템을 재정향합니다.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완전한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c) 장애인 조직의 긴밀한 참여를 통해 공공 정책 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의료, 보건 및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기타 전문가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협약에 따른 당사국.

7. 위원회는 당사국이 아직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8.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것을 권장한다.

9. 위원회는 다양한 장애인 조직을 포함하여 장애인 대표 조직을 통해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 부족에 대해 우려합니다.

10. 위원회는 일반논평 7 호(2018)를 상기하고 당사국이 장애인을 대표하는 기구를 통해 공공 의사 결정 과정에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강화 및 이행하고 의미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장애 아동, 심리사회적 장애 및/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인터섹스, 장애가 있는 여성, 장애가 있는 난민 및 이민자, 자폐증,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성별이 다양한 장애인과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B. 특정 권리(조항 5-30)**

**평등과 비차별(제 5 조)**

1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우려하며 관찰합니다.

(a)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 장애이주민, LGBTQI+ 장애인, HIV 장애인이 직면하는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은 차별금지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장애인,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나) 장애인복지법 제 15 조의 개정이 정신장애인을 보편적 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서 제외 한다는 사실

(c)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의 한 형태로서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에 대한 인식 부족;

(d) 장애인의 사법 접근을 제한하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의 부담.

12. 위원회는 일반 논평 6 호(2018)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목표 10.2 및 10.3 을 상기하고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합니다.



IM 센터 자체 번역이며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a) 기존의 차별금지법,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권리침해구제법 등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인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 연령, 성별, 인종, 민족, 성 정체성, 성적 취향 또는 기타 상태와 같은 다른 근거와 장애 및 장애의 교차점, 그리고 다중적이고 교차하는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합니다.

(b) 장애인복지법 제 15 조를 검토하여 협약에 따라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보편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시킨다.

(c)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사건에서 패소한 장애인이 상대방의 법적 비용 부담을 면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추가 비용 또는 행정적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 가능하고 공정한 환급 체계를 보장합니다.

(d) 합리적인 편의 제공 거부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로 인정하고 그러한 차별에 대한 보고를 효과적으로 조사하도록 합니다.

### 장애 여성(제 6 조)

13. 위원회는 우려를 표합니다:

(a)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에 젠더 관점이 포함되지 않고 젠더 관련 법률 및 정책에 장애 관점이 포함되지 않아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 주변화 및 배제가 심화됩니다. 장애인;

(b) 장애인과 관련된 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기 위해 장애의 인권 모델에 기반한 성인지적 예산 책정의 부족;

(c) 국가 입법 체계가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에 대한 교차 차별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으며, 적절한 정책 대응을 설계하기 위해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가 직면한 다중 교차 차별에 대해 수행된 데이터 및 연구의 부재;

(d) 고용, 공공 및 정치 생활, 의사 결정 및 사법부에서 장애 여성을 위한 권한 부여 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14. 위원회는 일반 논평 3 호(2016)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5 를 상기하고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합니다.

(a) 장애 여성 및 장애 소녀의 권리를 모든 젠더 입법에 주류화하고 젠더 관점을 장애 정책 및 프로그램, 특히 제 3 차 성평등 마스터 플랜(2023-2028) 및 장애 의제에 주류화하는 한편, 젠더 및 장애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설계 및 구현에 장애 여성 및 장애 소녀의 효과적인 참여;

(b) 일반적인 장애 문제와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이 성평등 관점에 기초하여 계획되고 예산이 책정되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c) 장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다중적이고 교차적인 형태의 차별을 법률에서 인식하고 성별 관점과 교차성을 반영하는 특정 법률과 전략을 채택합니다.

(d)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의 완전한 포용 및 모든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 당사국은 장애 여성이 정부 기관과 사법부를 포함하여 의사 결정 역할에서 정치 생활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장애 아동(제 7 조)

15.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우려하며 관찰합니다.

(a) 장애 아동과 협의하고 장애 아동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부재

(b) 장애 아동을 위한 일반적인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



IM 센터 자체 번역이며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c) 단지 0.03%의 놀이터만이 장애 아동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놀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16. 아동권리위원회와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공동성명(2022)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장애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러한 견해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합당한 비중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장애 아동의 발달 능력을 존중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b)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생활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아동을 포용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c) 장애가 있는 모든 어린이가 놀이터를 통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 관리법을 검토합니다.

**인식 제고(8 조)**

17.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우려합니다.

(a) 사회와 미디어에서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부재 장애인의;

(b) 정치 담론 및 소셜 미디어에서 자폐증, 심리사회적 장애 및/또는 지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 부정적인 고정관념, 편견, 광범위한 증오 및 비하 표현의 지속.

1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에 대한 편견에 맞서 싸우고 그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의 긴밀한 협의 및 참여를 통해 국가 전략을 채택합니다.

(b) 정책 입안자, 사법부, 법 집행관, 언론, 정치인, 교육자,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전문가,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 능력 및 공헌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모든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일반 대중에게 제공됩니다.

**접근성(9 조)**

19. 위원회는 우려를 표합니다.

(a) 최근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축물의 규모 및 건축연도와 관련된 면제조항이 있어 공공건물의 완전한 접근성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것;

(b) 정보 통신 기술 및 시스템의 부족을 포함하여 협약에 따른 모든 범위의 접근성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의 부족;

(다) 2022 년 1 월 교통약자의 교통약자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가 제외되고 버스 등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점 시각 및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버스 사용을 방해하는 번호 및 경로, 차내 안내;

(d) 장애인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디지털 업무환경의 장벽은 국공립기관에 한정되어 있다.

20. 위원회는 일반 논평 2 호(2014)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9, 세부 목표 11.2 및 11.7 을 참조하여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합니다.

(a) 크기, 용량 및 건설 날짜에 관계없이 모든 건물 및 구조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필수 규칙을 포함하도록 국가 법률을 수정합니다.

(b) 협약에 기술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접근성 전략을 채택하고 비준수에 대한 제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접근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합니다.

(c)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버스의 수를 늘리고, 버스 번호 및 노선을 포함한 정보를 차내 정보로 보장합니다. 지침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환경과 공공 장소를 개선하여 다양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d) 모든 장애인, 특히 시각 장애인이 교육 시설과 가정에서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 기술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생명권(제 10 조)

21.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a) 자폐인과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높은 자살률과 실종률, 장애가 있는 부모가 자살하기 전에 자녀를 죽이는 경우

(b)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질병(COVID-19) 대유행 기간 동안 시설에서 장애인의 사망.

22.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자폐인,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조치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국가적 자살 및 실종 예방 전략을 채택하고 이행하며, 대표 조직을 통해 장애인과의 긴밀한 협의 및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합니다.

(b)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중요한 건강 상황에서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의 긴급 탈시설화를 시작하기 위해 장애인 조직과 독립적인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협의하여 조치를 개발합니다.

#### 위험 상황 및 인도주의적 비상사태(제 11 조)

23.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심을 갖는다:

(a) 2018 년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는 장애인의 위험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재난 위험 감소 계획, 정책 및 프로토콜이 부족합니다.

(b) 2015-2030 재난위험경감 센다이강령과 기후변화적응 및 인천전략 목표 7 이행에 있어 장애인과 그 대표단체의 낮은 수준의 참여 국가 차원 및 보고 과정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인.

24.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모든 장애인, 특히 아동, 여성, 심리사회적 장애 및/또는 지적 장애 및 감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접근 가능한 재해 위험 감소 계획의 채택을 가속화합니다.

(b)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그리고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재해 위험 감소 및 기후 변화 적응 계획의 설계 및 구현에 대해 대표 조직을 통해 장애인과 긴밀히 협의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합니다. 2015-2030 재해 위험 감소를 위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및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11 및 13 에 따라.

25. 위원회는 장애인, 특히 아직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장애인이 비상 정보 및 장치에 접근하는 데 직면한 장벽에 대해 우려합니다..

26. 위원회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이 준비한 COVID-19 팬데믹에 대한 장애포괄적 대응에 관한 정책 브리핑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COVID-19 대응 및 복구 계획에 장애를 주류화합니다. 여기에는 전염병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백신 및 기타 경제 및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과 관련하여 포함됩니다.

(b) 비상 시 장애인을 탈시설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를 채택합니다.

(c) COVID-19 대응 및 복구 계획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과 그 대표 조직을 참여시킵니다.

(d) 위험 및 인도주의적 비상 상황에서 모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식과 적절한 장치에서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법 앞의 평등 인정(제 12 조)

27. 위원회는 심리사회적 및/또는 지적 장애를 근거로 장애인의 능동적 능력을 제한하는 후견인 제도 및 대체 의사 결정 제도 폐지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과 이 체제를 지원되는 의사 결정 시스템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시간 프레임. 위원회는 또한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되는 지원 의사 결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 우려합니다.

28. 위원회는 이전 권고<sup>4</sup>를 반복하며 일반논평 1 호(2014)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후견인 및 후견인을 포함한 대체 의사 결정 시스템을 개별화된 지원 제공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율성, 의지 및 선호도를 존중하는 지원 의사 결정 시스템으로 대체합니다.

(b) 장애인의 법적 능력 인정 및 의사 결정 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개혁 과정 및 관련 직원 교육에 장애인 대표 조직을 통해 장애인의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참여를 보장합니다.

(c) 점자, 수화 및 쉬운 읽기와 같은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지원되는 의사 결정에 대한 정보 개발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배포합니다.

#### 재판에 대한 접근(제 13 조)

29. 위원회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재판에 완전히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제한이 계속 존재하는 것에 대해 우려합니다.

30. 위원회는 이전 권고를 참조하고, '2020 년에 준비된 장애인의 사법 접근에 관한 국제 원칙 및 지침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목표 16.3 을 상기하고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합니다.

(a) 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사법적 접근에 관한 행동 계획과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모든 제한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및 사법적 조치를 채택합니다. 사법 절차;

(b) 장애인이 법적 절차의 다양한 측면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개별화된 지원 제공을 포함하여 절차를 조정합니다.

(c)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점자, 수화, 쉬운 읽기, 오디오 및 비디오 필사본과 같은 대체 및 보완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개발하고, 보편적인 디자인 원칙을 적용하고, 물리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채택합니다. 접근 가능한 교통 수단을 포함하여 모든 사법 시설로

(d) 사법 및 법 집행 공무원에게 협약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sup>4</sup> CRPD/C/KOR/CO/1 , 단락. 22.

<sup>5</sup> Ibid., para. 24.



IM 센터 자체 번역이며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한 개별화된 지원을 보장한다.

**개인의 자유와 안전(제 14 조)**

31. 위원회는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 및/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여전히 손상을 근거로 자유를 박탈하는 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장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감금을 포함하여 자의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32. 위원회는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한 지침을 상기하고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합니다.

(a) 성인 후견에 관한 민법 및 정신 건강법 조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입법 조항을 폐지하고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손상 및 인지된 위험을 근거로 자유의 비자발적 박탈을 허용하고 다음을 통해 비차별을 보장하는 법안을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심문 및 구금 중을 포함하여 장애인을 위한 절차적 편의 제공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강제 수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회복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기초;

(b) 심리사회적 장애 및/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의적이고 강제적인 대우, 특히 감금을 초래하는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수립합니다.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제 15 조)**

33. 위원회는 가족 환경, 정신과 기관, 병원, 교도소, 교육 서비스,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 및/또는 지적 장애.

34. 위원회는 당사국이 향정신성 약물 및 신체적 구속의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을 수행합니다.

(a) A 는 사법, 교육, 건강, 심리사회적 및 노인 요양 시설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모든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을 권고합니다. 장애인은 이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참여합니다.

(b) 아직 시설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항의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 관행의 가해자를 조사하고 제재합니다. 지휘하다.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제 16 조)**

35.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a)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일반 대중, 특히 장애인의 인식 부족과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의 부족 가족, 학교 및 직장을 포함한 모든 환경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

(b) 장애 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더 높은 폭력 비율에 노출되어 있으며 장애 아동에 대한 폭력 및 관련 불만에 관한 정보 및 통계 데이터의 제한적 가용성에 대해;

(c) 심리사회적 장애 및/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포함하여 폭력의 피해자인 여성과 소녀를 위한 접근 가능한 쉼터 부족

(d)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인식하는 데 있어 직원, 간병인 및 장애인 가족, 보건 요원 및 법 집행관에 대한 부적절한 교육.

3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채택하고/또는 지적 장애인 및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장애인이 사례를 피하고, 인식하고, 보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갖고 착취, 폭력 또는 학대의 피해자인 장애인이 독립적인 불만 제기 메커니즘과 적절한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재환을 포함한 배상 및 적절한 보상;

(b) 기관 내외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개발 및 이행하고 효과적인 이행 및 모니터링을 보장하기 위해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c) 지원 센터 및 긴급 대피소와 같이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인 장애 여성 및 장애 소녀를 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

(d)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인식하고 피해자인 장애인과 더 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간병인, 의료 전문가 및 법 집행관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폭력의.

#### 개인의 온전성 보호(제 17 조)

37. 위원회는 장애 여성과 소녀의 강제 불임 수술을 금지하는 법적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우려합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당사국이 수행한 조사에 대한 정보의 부재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38.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 여성과 장애 소녀, 특히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소녀에 대한 강제 불임 시술과 동의 없는 임신 중단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사국은 명시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는 모든 사례를 식별, 조사 및 후속 조치하고 그러한 경우에 완전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강제 불임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이동 및 국적의 자유(제 18 조)

39. 위원회는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대한민국 입국 권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박탈하는 출입국관리법 제 11 조의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민자의 기본 장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장애인 복지법 제 32 조에 의거합니다.

40. 위원회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장애가 있는 이주민이 장애 서비스.

####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함됨(제 19 조)

41.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우려하며 관찰합니다.

(a) 장애인을 지역사회에 통합하고 개인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한 장애인의 지속적인 제도화 및 노력 부족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고 지역사회에 포함될 권리, 어디서 누구와 살지 선택할 권리, 특정 생활을 할 의무가 없는 권리에 대한 사회 및 공공 당국의 인식 부족 준비;

(b) 기존 주거 시설에 배치된 장애 여성 및 아동을 포함하여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화 전략의 미약한 이행 및 장애인,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 및/또는 지적 장애인을 재정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부족 주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42. 위원회는 일반논평 5 호(2017)와 비상사태를 포함한 탈시설화에 관한 지침<sup>6</sup>을 상기하고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검토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하고, 충분한 예산 및 기타 조치와 인식 제고 활동을 포함하여 생활 방식에

<sup>6</sup> CRPD/C/27/3.





IM 센터 자체 번역이며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한 장애인의 선택권 및 자기 결정권, 특정 생활 방식에서 살지 않아도 될 권리, 지역사회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포함의 가치;

(b) 여전히 주거 환경에 있는 성인 및 장애아동의 탈시설화 과정을 위한 탈시설화 전략의 이행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입니다..

**표현과 의견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제 21 조)**

43.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심을 갖는다:

(a) 접근 가능한 형식의 정보 및 정보 통신 기술(예: 쉬운 읽기, 일반 언어, 캡션, 수화, 점자, 오디오 설명 및 촉각, 보완 및 대체 통신 수단)의 불충분한 제공에 대해 민간 매체, 특히 공공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장애인의 정보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 부족;

(b) 다음에 관한 지침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제공에는 쉽게 읽을 수 있고 다른 액세스 형식과 모드 및 통신 수단을 통해 적절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4.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텔레비전 및 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공공 정보가 점자, 청각 장애인 통역, 수화, 쉬운 읽기, 일반 언어, 오디오 설명, 캡션 및 자막과 같은 접근 가능한 통신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 장애인의 다양성에 적합한 정보 통신 기술의 개발, 홍보 및 사용, 접근 보장

(b)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지침을 검토하십시오. 읽기 및 기타 액세스 형식과 모드 및 통신 수단을 통해.

**프라이버시 존중(제 22 조)**

45. 위원회는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추적 장치가 자폐인, 심리사회적 장애 및/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무료 및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없이 발급되어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관찰합니다.

46.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장애인, 특히 자폐인, 심리사회적 장애 및/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신경발달 장애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들의 동의 하에 추적 장치가 발급되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b) 실종 방지 정책을 포함하여 협약 및 장애의 인권 모델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제 23 조)**

47. 위원회는 다음에 대해 우려한다.

(a) 가족, 부모 및 관계와 관련하여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 후견인의 보호 하에 있는 심리사회적 장애 및/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권리에 대한 당사국 법률의 명시적 인정 부족

(b) 장애 아동과 그 가족, 장애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4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장애인 여성, 심리사회적 장애 및/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장애인이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부모의 책임을 수행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십시오.

(b) 장애인 가족이 가족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조치를 채택합니다.

#### 교육(제 24 조)

49.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심을 갖는다:

(a) 당사국은 의학적 장애 기반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특수 교육을 유지하고 특수 학교의 수를 정기적으로 늘려 자폐아와 지적, 심리사회적 또는 분리된 특수 교육을 받는 다중 장애;

(b) 점자, 수화 및 접근 가능한 교육 방식에 대해 교육을 받은 교육 및 지원 직원의 부족과 통합 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역량에 대한 교사 교육 수준에 대해;

(다) 유치원 외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교육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50. 위원회는 일반 논평 4 호(2016)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목표 4.5 를 상기하면서 이전 권고를 반복하고 7당사국 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a) 교육 요구 사항 및 필요한 편의 시설에 대한 개별화된 인권 기반 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 교육에 포용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종합적인 포용 교육 정책을 수립합니다. 통합 교육에 대해 교사 및 비교육 교육 담당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b)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포괄적인 디지털 액세스와 같은 대체적이고 접근 가능한 형식의 보조 보상 보조 장치 및 학습 자료와 쉬운 읽기, 통신 보조 장치 및 보조 및 정보 기술을 포함한 통신 모드 및 수단을 제공합니다.

(c) 보건복지부 산하 분리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을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으로 전학시키도록 한다.

#### 건강(제 25 조)

51. 위원회는 상법 732 조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정신적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을 위한 생명 보험 계약을 인정한다는 점에 여전히 우려를 표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의 건강권이 임신, 출산, 모성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도 우려된다.

52. 위원회는 협약 제 25 조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목표 3.7 및 3.8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이전 권고 8를 반복하고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합니다.

(a) 상법 732 조를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 의료 서비스 및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여성의 건강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특정 프로그램을 개발 및 구현합니다.

(b) 장애인의 기술, 지원 조치, 의사소통 수단 및 방법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의료 전문가를 위한 교육을 개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 점자, 수화 및 읽기 쉬운 형식을 포함하여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애,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 및/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과 장애가 있는 여성 및 소녀.

#### 재활 및 재활(제 26 조)

53. 위원회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지원이 한국 국민과 결혼한 장기 거주자 및 비국적자에게만 제공되며, 장애인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비국적 장애인이 의료 및 재활 치료, 직업 훈련 및 개인 지원에 접근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sup>7</sup> CRPD/C/KOR/CO/1, 단락. 46.

<sup>8</sup> Ibid., para. 48.



IM 센터 자체 번역이며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54. 위원회는 당사국이 재활 및 재활 시스템을 확장하고 시민권 또는 거주 자격에 관계없이 장애인이 개별 요구 사항에 따라 재활 및 재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과 고용(제 27 조)**

55.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우려를 표합니다.

(a) 심리사회적 장애 및/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노동 시장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차별적 법률;

(b) 최저임금법은 장애인이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많은 장애인이 최저임금 이하의 보상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사실;

(c) 보호 작업장에서 계속되는 장애인의 분리와 장애인 근로자를 이러한 작업장에서 개방된 노동 시장으로 점진적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부족.

56.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목표 8.5 에 따라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합니다.

(a) 열린 노동 시장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차별적 법률을 폐지하고 모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와 특히 다음과 같은 차별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합니다. 광고, 채용 절차, 합리적인 편의, 재교육, 승진 및 업무 및 고용과 관련된 기타 권리

(b)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를 보장하고 최저임금법의 혜택에서 제외된 장애인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검토합니다.

(c) 탈시설화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청각 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인 및/또는 지적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이 개방된 노동 시장에서 일과 고용에 접근하고 포괄적인 업무 환경;

(d) 장애인이 보호 고용에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구현하고, 공개 노동 시장에서 장애, 특히 장애가 있는 여성.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제 28 조)**

57.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우려를 표합니다.

(a) 장애 소득 및 사회 보장 정책에 따라 당사국의 높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장애 수당 및 장애 연금으로 제공되는 금액의 부족

(b) 일부 장애인은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후에도 여전히 연금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c) 장애가 있는 이민자는 장애 등록을 마친 후에도 장애 연금과 같은 필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8. 위원회는 협약 제 28 조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의 목표 10.2 사이의 연관성을 상기하면서 장애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경제적 포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합니다.

(a)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 및 빈곤 감소 계획을 강화하고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장애 수당 금액을 검토합니다.

(b) 모든 장애인이 장애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히 의무 제공자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여 장애 연금 제도에 대한 자격을 확대합니다.

(c) 장애가 있는 이민자와 난민이 기본 생활 보장 및 장애 혜택과 같은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IM 센터 자체 번역이며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 및 공적 생활에의 참여(제 29 조)**

59.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가. 치료 중이거나 구치소에 있는 장애인을 선거과정에서 제외하는 치료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차별적 규정 나.

(b) 과소대표되는 청각 장애인, 심리사회적 장애 및/또는 지적 장애, 청각 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정치 및 공적 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부족;

(c) 투표소, 투표 절차, 시설 및 자료뿐만 아니라 공개 선거 토론, 선거 프로그램 및 온라인 또는 인쇄된 선거 자료를 포함하여 선거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사람들의 효과적인 정치 참여를 제한합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60.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장애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모든 차별적 조항을 폐지하고 장애인이 선거 과정과 정치 및 공적 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b) 청각 장애자, 심리 사회적 장애자 및/또는 지적 장애자, 청각 장애인 및 장애 여성을 포함하여 소외된 장애인 그룹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선출된 대표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도입합니다. 특히 소수 정당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장애;

(c) 선거 및 투표 절차, 시설, 온라인 또는 인쇄된 선거 자료가 평이한 언어와 쉬운 읽기로 접근 가능하여 모든 장애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문화 생활,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 참여(제 30 조)**

61. 위원회는 맹인, 시각 장애인 또는 인쇄 장애가 있는 사람의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라케시 조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부족과 장애인, 특히 장애아동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 생활,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에 참여합니다.

62.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애인 대표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라케시 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은 장애인, 특히 장애 아동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 생활, 레크리에이션, 레저 및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C. 특정 의무(조항 31-33)**

**통계 및 데이터 수집(31 조)**

63. 위원회는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직면하는 장벽에 대한 세분화된 데이터의 수집 및 공개 보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일관된 조치가 부족한 점을 우려합니다.

64. 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와 워싱턴그룹의 짧은 질문들을 상기함 장애인의 포용과 역량 강화에 관한 정책 지표를 제시하고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합니다.

(a) 연령, 성별,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소득, 이민 상태, 교육 수준, 고용 상황 및 거주지에 따라 세분화된 장애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시스템 및 절차를 신속하게 개발합니다. 시스템과 절차는 기밀성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b) 장애인의 권리 이행에 대한 장벽을 식별할 목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할당합니다. 당사국은 장애인 통합의 장벽에 대한 정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IM 센터 자체 번역이며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c)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된 장애 관련 정책과 조치를 알리기 위해 양적 및 질적 독립적이고 참여적인 연구를 지원합니다.

**국제협력(제 32 조)**

65. 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개발 협력 노력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의 부족과 장애인 조직, 특히 장애 여성 조직의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협력 파트너.

66.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다루는 지역적 틀인 인천 전략을 포함하여 국제 협력 계획,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개발 및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장애인 단체와 효과적으로 협의하고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가적 이행 및 모니터링(제 33 조)**

67.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우려를 표합니다.

(a) 장애인을 위한 정책조정위원회와 그 소위원회는 1 년에 최대 3 번만 회합하므로 장애 정책의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b) 2021 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재인정 과정에서 단일 기관 설립을 위한 글로벌 국가인권기구 연합 인증 분과위원회의 권고 이행에 대한 진전 부족 독립적인 선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68.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장애 정책의 효과적인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정책 조정 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 의 회의 주기를 강화합니다.

(b)국가인권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단일 선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며 인적 자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기구 글로벌 연합 인증 소위원회 의 권고사항을 이행합니다.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지위와 관련된 원칙(파리 원칙)을 완전히 준수하여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 IV. 후속 조치

**정보 보급**

69.위원회는 현재 최종견해에 포함된 모든 권고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반드시 취해야 할 긴급 조치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장애 여성에 관한 14 항과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 포함되는 것에 관한 42 항에 포함된 권고 사항에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70.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당사국에 요청한다. 당사국은 고려 및 조치를 위해 최종견해를 정부 및 국회의원, 관련 부처의 공무원, 지방 당국 및 교육, 의료 및 법률 전문가와 같은 관련 전문가 그룹의 구성원에게 전달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대적인 소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하는 미디어.

71.위원회는 당사국이 정기 보고서 준비에 시민사회단체, 특히 장애인 단체를 참여시킬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72. 위원회는 당사국이 비정부기구 및 장애인 단체,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수화를 포함한 자국어 및 소수 언어로 본 최종견해를 광범위하게 유포할 것을 요청한다. , 쉬운 읽기를 포함하여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고 인권에 관한 정부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정기 보고**

73.당사국은 간소화된 보고 절차에 따라 보고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에 앞서 쟁점 목록을 작성하고 쟁점 목록 접수 후 1 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IM 센터 자체 번역이며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국에 요청할 것이다. 2031년 1월 11일까지 예상되는 당사국의 답변은 합산된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정기 보고서가 될 것입니다.

---